

의안번호	제 146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4월 일 (제299회)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종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4월 4일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4월 4일

발 의 자 : 김종필 · 김봉희 · 정 현 · 김희수 ·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3조, 안 제18조, 안 제20조)
- 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예산조치 :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총 5,727백만원
(국비 2,864 도비 675 자부담 2,188)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에너지기본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”를 “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8호 중 “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거”를 “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“자발적 협약”이란 법 제2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“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”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“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”이란 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5호 중 ““에너지절약 전문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“에너지절약 전문기업”이란 법 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2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4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2조의 규정의 의

하여”를 “법 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 「건축법」 제23조”를 “ 「건축법」 제27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기본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,사업자,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본원칙)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본원칙) 충청북도 (이하 "도"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환경표지 인증제품”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, 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.</p> <p>9.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함은 법 제12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,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17조에 따라----- -----.</p> <p>9. “자발적 협약”이란 법 제 28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0. “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.</p>	<p>10. “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”이란 법 제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11. ~ 14. (생략)</p>	<p>1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15. “에너지절약 전문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선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.</p>	<p>15. “에너지절약 전문기업”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6. ~ 24. (생략)</p>	<p>16. ~ 2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산업 부문)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8조(산업 부문) ① ----- 법 제28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법 제14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법 제25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~ ⑤ (생략)</p>	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건물부문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20조(건물부문) 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「건축법」 제23조의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건축법」 제 2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⑥ ~ ⑨ (생략)</p> <p>제2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 5퍼센트 이상을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 12조 제2항에 의거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한다. 다만, 동법 시행령 제5 조제 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건축물은 제외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민간부문 및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권장 할 수 있다.</p>	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관 계 법 령

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제6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14조(금융·세제상의 지원)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,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·설치·시공,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·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)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(이하 "에너지절약전문기업"이라 한다)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>

1.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·용역사업
 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
-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,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28조(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(이하 "자발적 협약"이라 한다)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,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□ 에너지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 [제20조에서 이동 <2008.3.21>]

□ 건축법
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(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